

영등포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유규 의원 발의】



2017. 9.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0호로 2017년 9월 20일 박유규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 책무(안 제3조)

다. 심폐소생술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민 등의 교육(안 제5조)

마.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안 제6조, 안 제7조)

바. 심폐소생술 교육 사후관리(안 제8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나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주민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 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6.1., 2015.7.24., 2016.3.29.>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2014.11.19., 2017.7.26.>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